

개포우성1·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
예비추진위원장·예비감사 선거를 위한
후보자 등록 공고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18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76조 및 「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」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개포우성1·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추진위원장·예비감사 선거를 위한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6월 29일

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

1. 등록기간: 2026. 7. 7.(화) ~ 2026. 7. 8.(수) 9:00 ~ 18:00 까지

※ 점심시간(12:00~13:00)은 접수 불가

2. 등록장소 및 방법

가. 등록장소

- 개포우성1·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 사무실
(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0 개포우성1·2차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내)

나. 등록방법

- 등록장소에 현장방문 및 우편등기 접수(등록마감일 18:00 도착분까지)

3. 선출(선임) 인원 수

가. 예비추진위원장 : 1인

나. 예비감사 : 1인

4. 등록 시 제출서류

- 1)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(별지 제2호 서식) / 공유자(공동명의자)에 한함
- 2) 후보등록 신청서(별지 제6호 서식)
- ※ 최종학력, 직장, 사회경력 및 이력은 반드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제출한 증빙서류의 내용에 한하여 인정함
(졸업증명서, 재직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)
- 3) 후보자 추천서(별지 제5호 서식) / 공공지원자 검인 추천서에 한하여 유효
- 4) 제출서류 확인조사 및 공개용 동의서(별지 제7호 서식)
- 5) 이행각서(별지 제8호 서식)
- 6) 선거공보 작성(안)(별지 제9호 서식) / 후보자 확정공고일까지 제출(pdf 포함)
- 7) 후보자 정견서(별지 제10호 서식) / 후보자 확정공고일까지 제출
- 8) 신분증명서 사본(주민등록증, 여권 등)
- 9)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자는 직장대표자의 겸직동의 공문서(입후보 동의서)
/ 해당자에 한함
- 10) 예비추진위원 승낙서(별지 제14호 서식)
- 11) 범죄사실 조회 및 선거관련 정보제공 동의서(참고 제3호 서식)
- 12) 주민등록표 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/ 거주요건·신원 확인용
- 13) 사업자등록증 사본 / 해당자에 한함
 -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
- 14) 토지·건축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/ 소유자 및 소유요건 확인용
 -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
- 15) 투표참관인 등록 신청서 (별지 제13호 서식) / 신청할 경우에만 제출
- 16) 투표참관인 승낙서(참고 제2호 서식) / 신청할 경우에만 제출

5. 후보자 등록 요건

가. 예비추진위원장·예비감사 후보 :

- 1) 토지등소유자로서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
(공유자인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대표소유자로 한정함, 이하 같음)
- 2) 토지등소유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고 토지등소유자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
 - (1) 피선출일 현재 정비구역 안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
(거주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거주로 봄)
 - (2) 피선출일 현재 정비구역 안에서 5년 이상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

예비추진위원장·예비감사 후보자 추천 시 유의사항

- 토지등소유자 1인당 예비추진위원장 후보자 중 1인, 예비감사 후보자 중 1인만 추천할 수 있음 (중복추천 불가)
※ 만일 토지등소유자 1인이 둘 이상 후보를 추천 시 모두 무효처리됨
- 공동소유일 경우 : 대표소유자 선임 시에만 후보 추천 가능
- 입후보자 본인 추천 불가 (단, 타 후보자는 추천가능)

나.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기준

-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예비추진위원장·예비감사가 될 수 없음
 - (1)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- (2)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- (3)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(4)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 - (5)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(6)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,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·직계존속·직계비속

6. 후보자 자격 심사 기간 : 2026.7.9.(목) ~ 31.(금)

※ 주요 심사내용 : 적격요건, 결격사유 해당 여부, 겸임여부 등

7. 예비추진위원장·예비감사 선출 방법

- 선거를 통해 최다득표자를 예비추진위원장·예비감사로 선출 (각각 1명)
※ 단, 단일 후보일 경우 무투표 당선

8. 기타사항

- 제출서식 : 공공지원 사무실에서 교부받거나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,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출력 가능
(단, 후보자 추천서는 반드시 공공지원자 검인 추천서를 공공지원 사무실에서 교부받은 서식에 한하여 유효함)

9. 문 의

- 개포우성·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사무실 ☎02-556-4554, 전화번호 변경 시 별도 문자 안내 예정.
-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☎02-3423-6093) 끝.